

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병도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886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8월 7일

발 의 자 : 이병도, 김동식, 김용연, 김상훈,
유 용, 김태수, 김소양, 이정인,
채유미, 김혜련, 이영실, 서윤기,
오현정, 봉양순, 김화숙 의원
(15명)

1. 제안이유

- 장기요양요원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지원 등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이들의 노동가치가 낮게 평가되고, 사회적 인식과 현실적인 처우가 낮을 뿐만 아니라 권리 침해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.
- 이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, 복지증진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,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에서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침해에 대한 상담 및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,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권리를 보호하여 장기요양요원이 복지현장의 중요한 일원으로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과 관련한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근거를 마련함.(안 제6조제1항제4호)
- 나.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기능에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침해에 대한 상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.(안 제10조제5호 신설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, 「근로기준법」,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제4호 중 “복지 증진을”을 “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”로 한다.

제10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침해에 대한 상담 및 지원에 관한 사항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처우개선 사업 등)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10조(센터의 기능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5. (생략)</p>	<p>제6조(처우개선 사업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----- <u>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</u> ----- ----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0조(센터의 기능)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<u>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침해에 대한 상담 및 지원에 관한 사항</u></p> <p>6. (현행 제5호와 같음)</p>

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 (처우개선 사업 등)제1항제4호를 개정함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처우개선의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되지 않아 비용추계 곤란
 - 같은 조례안 제10조(센터의 기능)에 제6호를 신설하는 것은 기추진사업이므로 발생하지 않음(붙임 참조)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3. 미첨부 사유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(제3조제1항제2호)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

담 당 관 남승우

정책조사팀장 여차민

주 무 관 채소영

☎ 02-2180-7942

e-mail : liz1998@seoul.go.kr

붙임

2019년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센터 운영

(안 제10조제6호 관련)

사업목적

- 영양보호사 등 어르신돌봄종사자 건강관리 프로그램, 교육, 상담 등 지원을 통한 어르신돌봄서비스의 수준 향상

사업개요

- 지원근거 :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47조의2(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등)
「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」 제6조(처우개선 사업 등), 제9조(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)
- 사업내용
 - 건강증진·직무향상·리더양성 교육 등 돌봄종사자 역량강화
 - 시민캠페인, 정책토론회 등을 통한 사회적 인식개선 확산
 - 고충상담, 취업상담 등 돌봄종사자 권익보호
- 소요예산 : 3,795,826천원
 - 종합센터운영비, 임대료, 쉼터운영비/ 쉼터 3개소 추가조성 보증금/ 쉼터 추가조성 리모델링비 등